

2023 예술분야 창업 특화(ESG) 지원 사업 공모요강

'예술분야 창업 특화(ESG) 지원' 사업은 예술분야 창업 기업의 사업모델 개발, 경영 안정화, Scale-up 등 사업의 확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확고한 성장 의지를 가진 *예술분야 창업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예술분야 창업기업이란?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술 분야의 기업(업력 7년 이내(중소기업 창업기업법 제2조)을 모두 포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정의) 및 제 36차(개정 22.9.27.), (시행 23.3.28.)기준으로 예술기업 정의

* 연예, 영화, 만화, 건축, 출판, 어문, 게임, 애니메이션 등은 후 순위

□ 공모 개요

○ (공 모 명) 2023 예술분야 창업 특화(ESG) 지원 사업 공모

* 예술분야 창업 특화(ESG) 지원 사업은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탄소배출, 재활용 등 생태계 보존	공정성, 포용성, 장애, 인종 등 다양한 문화	기준과 규범 준수 등 투명성 강화

환경, 기후, 지역사회, 일자리 등 사회환경적 문제를 해소하고 예술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ESG경영 차원에서 예술기업들의 안정적인 비즈니스와 혁신적인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기회제공 및 사업화 자금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공모목적) 사회·환경적(ESG) 문제해결을 동반한 예술분야 사업모델 발굴 및 육성

○ (지원대상) 사회·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예술분야 창업 설립 7년 이내

○ (협약기간) 2023년 4월 ~ 11월 (약 8개월)

○ (선정규모) 총 10개 기업 내외

○ (지원내용)

- (자금지원) 사업화 자금 30백만원 ~ 70백만원 차등 지원(자부담 10% 필수)

※ 총사업비(100%) = 지원금 90% + 자부담금액 10%필수 (총사업비 정산 필수)

※ 심사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창업보육) 기업별 진단 후 전담 멘토 배치, 맞춤형 컨설팅, 네트워킹 등 지원

- (자원연계) IR 데모데이, 기업협력 등 외부자원연계 및 유치 기회 제공
- (성과지표) 사회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 (네트워킹) 예술분야 창업 특화(ESG)지원 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제공
- (성과평가)
 - (성과관리) 지원사업 전, 중간, 종료 이후 목표 설정 및 측정
 - (중간평가) 성과목표 달성도, 성실참여도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 (최종평가)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금 지급, 우수기업은 차기년도 지원 신청 시 심사 면제

□ 신청 대상 및 요건

▶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해 “창업 특화(ESG)” 지원 사업은 최대 3회 신청·선정이 가능합니다.

- 단, 공모 신청 시 단계별 신청요건(업력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의 각 단계별 참여 이력이 누적 적용됩니다.
'20~22년 예술기업 공모전, '19~22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서로(SEORO)

- (신청대상) 예술을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가치 실현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구축 또는 사업 모델 안정화·확장을 추구하는 기업
 - ※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사회·환경적(ESG)문제 해결 솔루션이 부재한 창·제작, 공연·전시·행사·해외투어 및 지속 가능성이 없는 단기 프로젝트 형태 사업은 지원 제외
- (신청요건)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이 2016년 2월 8일 ~ 2023년 2월 8일 사이인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단, 중소기업창업법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에 의거,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동종전환), 개인사업자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업력으로 판단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우대사항) 해당되는 경우 1차 심사 시 가산점 부여(각 2점씩)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 SVI-SK, SPC문화예술 사회·경제적 성과 측정 등 사회성과 측정 경험 보유 기업

- 19년~22년 예술공모전(예비, 초기, 성장) 및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서로(SEORO)지원사업(시작, 세움, 성장) 선정기업 중 수상기업(팀)(IR데모데이, 투자유치대회, 임팩트투자유치대회 수상)
- 21년~22년 KOPIS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수상기업(팀)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일 경우
(1983년 2월 9일 이후 출생자, 공동대표의 경우 1인만 해당해도 가능)
-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외 지역인 기업
- 사업주가 장애예술인 또는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예술인으로 고용한 사업체

○ (신청 제외대상)

- ① 고유번호증·면세사업자 신청 불가
- ② 사업자등록 개시 후 7년 이내 기업이 아닐 경우
- ③ 예술경영지원센터 동 기간 모집 중인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공모,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 공모,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와 중복 신청 불가(심사대상 제외)
- ④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④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⑤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⑥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⑦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gambling·베팅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지급의 제한을 받은 기업
- ⑫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⑬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 (지원 제외대상)

- ① 2023년 타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지원기관의 유사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중복공모신청 가능하나, 최종 선정(협약)은 1개 사업만 선택해야함. 추후 중복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조치되며 이후 예술분야 창업기업 공모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타 사업 동시수행 불가)
- ② 단, 본 공모사업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등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을 완료(협약 종료) 또는 3개월 이내 협약 종료 예정인 기업은 신청 가능함
- ③ 창업공간지원, 공유오피스 등 공간 지원만 받는 경우나 홍보 지원, 바우처 지원, 교육 지원 등 사업화 자금이 아닌 부분 지원을 받는 경우엔 공모신청 가능 (선정 시 집행 중복 불가)

□ 사업 수행 시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 협약체결 후 중도포기 시 향후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취소(사업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 협약서 및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가이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공모신청 시 계획한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시 필수 참여 및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 지출마감 기한을 준수해야 함
 - 집행가능기간 : 교부일 ~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 제출서류 : 사업종료 이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 교부 확정 통지 이전 집행 건 및 집행마감 후 집행 건에 대해서 불인정 처리함
 - * 사업종료 이후 회계검사 진행 및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필수
- (신청 시)
 - 신청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접수마감 이후 변경이 불가함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우대사항 관련 증빙 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심사 과정에서 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 및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사업수행 시)

- 자부담금액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이후에도 자부담금액 비율을 유지해야 함
- 사업선정 이후 세부사업 및 예산계획을 센터 및 육성기관과 협의한 후 교부 예정임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보조금, 자부담 집행 필수임
- 사업 선정 이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전 과정에 필수 참석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기업 성장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 중단 가능함
- 사업기간(협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 가능함
- 교부 이후에도 신청 사업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이 있을 경우 보조금 반납 조치함
- 본 사업의 보조금은 타 정부지원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전에 센터 승인 없이 임의 용도 변경하여 집행한 지원금(자부담 포함)은 불인정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사업기간 내 '문화예술 사회성과 지표개발 및 측정'에 필수로 참여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 선정자는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성과 관리 등에 필요한 설문, 조사, 정보 제공 등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신청 · 접수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 ~ 2023년 3월 10일(금), 15:00까지

※ 접수 마감일 이후 최종 선정 수의 1.5배 미만 접수 시 접수기간 연장될 수 있음

○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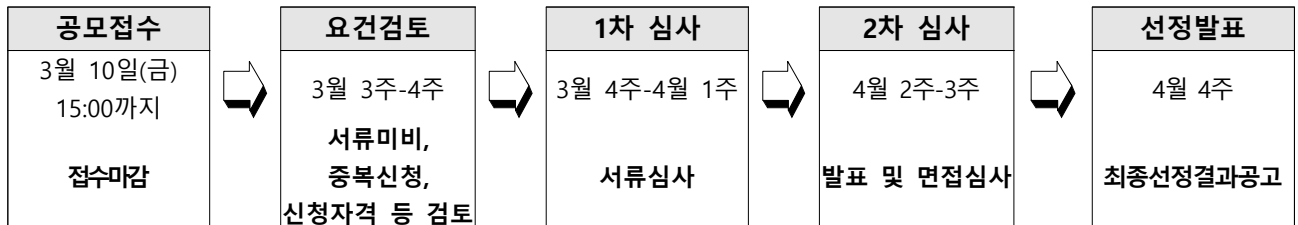
제출서류		비고
필수	① e나라도움 공모신청	e나라도움 시스템 작성
	② 지원 신청서 양식(HWP) 1부 * 서명기입 등으로 PDF변환 할 경우 HWP, PDF 각 1부 제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③ 21년 및 22년 재무제표 또는 수지계산서 *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수지계산서(서식참조) 작성하여 제출 * 23년 설립기업은 재무현황으로 대체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법인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제출 (등기부등본의 경우 말소포함, 전체 페이지 제출)	
	⑥ 대표자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 발급방법 (국세청)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	
선택	① IR(기업소개 및 투자제안서), 포트폴리오 등 (10페이지 이하)	
	② 기타 지정·인증서	

○ (주의사항)

- 접수마감(23. 3. 10.(금), 15:00까지) 기한 내 e나라도움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유효함(15시 이후 입력 불가)
- 접수마감 임박하여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접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접수 완료 바람
- e나라도움 시스템 특성상 마감시간 15:00부터 입력 불가(신청서 작성, 자료 업로드 중 마감시간이 되면 등록 및 완료 불가함)
-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 불가

□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2023년 3월 3주 - 4월 4주(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외부 전문가에 의한 1차 및 2차 심사

※ 2차 심사의 경우 1차 선정기업 대상으로 심사방법 별도 공지 예정

○ (심사기준) 사업성, 혁신성, 사회·환경 기여도, 실현가능성, 예술기여도 등

□ 운영일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지원본부 기업성장지원팀

- 전화: 02-708-2291

- 이메일: startup@gokams.or.kr

※ 전화문의 : 평일(월~금) 10:00~17:00 중 가능(평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0조)

※ 지원 사업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게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기업명) 주식회사 모람플랫폼 (예비사회적기업) *22년 초기 지원
- (주요사업) 광주, 전남 지역의 공방과 원데이클래스, 핸드메이드 공예정보를 소개하는 지역 콘텐츠 플랫폼
- (사회성과) 비수도권 지역의 문화예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기회제공



- (기업명) 주식회사 디스에이블드 (소셜벤처) *21년 성장기 지원
- (주요사업) 발달장애인 종합예술 에이전시로서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 제공, 발달장애인 예술가 작품 리-디자인 상품 제작 판매
- (사회성과) "발달장애인 예술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발달 장애인 예술가를 위한 추가거래기회 제공" 등 스스로 작품 홍보·판매 활동이 불가능한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주도



- (기업명) 주식회사 옴니아트 (예비사회적기업) *19년 초기, '20년 성장기 지원
- (주요사업) 온디맨드 라이선스 커머스 플랫폼 "캔버스" 개발. 신진 작가가 저작권 보호 하에 작품 게시, 고객 주문 시 제조사 연동되는 플랫폼 구축. 동시에 신진 작가들의 회화작품을 업사이클링 제품(얼킨)으로 개발하며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
- (사회성과) "신진 회화작가의 창작활동 소득 증대", "폐기물 배출 감소", "신진 회화작가 작품의 공공 전시·노출 효과" 등으로 플랫폼을 통해 신진작가 작품을 알리고 판매를 증진시키는 새로운 채널 역할 맡아 판매량이 증가될수록 사회적 가치가 증대



- (기업명) 주식회사 댄스플래너 (예비사회적기업) *19년 초기 지원
- (주요사업)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무용수, 경력단절여성 무용수, 은퇴 무용수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컨설팅·교육·인턴십·오디션 개최 지원 및 무용 해외시장 개척
- (사회성과) "무용 전공자의 고용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 "취약 무용 전공자 자본 이전" 등으로 이를 통해 국가 단위의 국내 무용 취업률 성과 증대에 역할. 또한 무용수들의 일자리를 정량 확대 성과를 넘어, 국내 무용 생태계의 저변이 확대되는 변화에 기여